

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제안 답변

건의자	윤**	연락처	010-****-****, e-***@hanmail.net
제 목	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제정 요청		
건의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 제8조 제1항 제9호의 고속국도에 한정된 부분에 대해 서울시 관리도로 전체에 대해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의 통행료 혜택이 있도록 서울시 조례 제정을 요청함. - 이는 제도 발효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됨 		
관련법령	유료도로법,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		
담당부서	도로계획과	담당자	이유리
검토의견	<p>○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 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적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는 고속국도에서 통행료 감면 대상(50% 감면) - 우리시 관내 민자도로 등 유료도로에서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 필요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유료도로법〉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제8조(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)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”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. 1~8. (생략) 9.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④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한다)는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,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 ※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에 따라 남산1,3호 터널 이용차량 중 일정요건을 갖춘 친환경차의 경우 통행료 50% 감면을 적용 - 경기도, 광주광역시의 경우 「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따라,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을 적용, 민자도로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재정 지원함. - 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」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,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한 사항은 없음.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〉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		

<p>검토의견</p>	<p>○ 검토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리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자동차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, 수소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. ※ 통행료 감면 금액 : 연 64백만원(도로공사 전기차 비율 0.06% 적용시) <p>○ 조치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」 개정을 통해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검토 추진 예정임
<p>조치결과</p>	<p>관련부서와 검토 추진</p>